

제 호

## 온돌 설치 확인서

(관계처 제출용)

NO. 903511

## 1. 일반사항

건축물 개요	소재지	간접도	감동시	일본광	29-1 츠 / 풍지	
	용도		건축면적		난방면적	
시공자	건축주	○	[REDACTED]	전화번호	010-XXXX-XXXX	
	성명	박	[REDACTED]	등록번호	3종 관리 21	
	상호	온돌	[REDACTED]	전화번호	010-XXXX-XXXX	
	주소	관내시	[REDACTED]			

## 2. 설치현황

보일러	열원	<input type="checkbox"/> 기름, <input type="checkbox"/> 천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가스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열원( )	방열관	규격	150mm
	용량	22.000 kcal		종류	에센트리드
	제조사	대성 [REDACTED]		간격	200mm
				온돌방식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온수온돌, <input type="checkbox"/> 구들은돌

## 3. 설치내역 확인사항

	구분	확인내용	특기사항
보일러설비	수압 및 안전장치	설치	
	엔소 및 배기성능	"	
	연료계통의 누설 여부	설치	
	자동제어의 성능	설치	
온수온돌설비	바닥표면온도 균일 여부	설치	
	단열층 시공상태	설치	
	방수·방습층 설치 여부	설치	
	조립식 온수온돌판 시공상태	설치	
구들은돌설비	환기구명 또는 환기설비 설치 여부	설치	시공자인 시공자
	공기흡입구 설치 여부	"	
	고래바닥 경사도상태	설치	
	아궁이 유도관 경사도상태	설치	
그 밖의사항	굴뚝 내부단면적 적정성	설치	
	부대 배관설비 보온상태	설치	년 월 일
	쾌적하고 효율적 에너지관리	설치	2010. 12. 26

「건축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2항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공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10년 12월 26일

시공자: 박 [REDACTED]



구비서류: 시공자 건설업등록증 사본

※ 작성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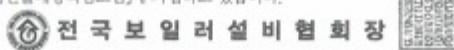
- 「주민등록」란에는 「건설산업기본법」제41조에 따른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보일러의 「열원」란에는 해당되는 □란에 ✓ 표를 하고, 그 밖의 열원인 경우에는 해당 온돌방식을 기재합니다.
- 「온돌방식」란에는 해당되는 □란에 ✓ 표를 합니다.

210mm x 297mm 일면종이 60g/m<sup>2</sup> (재활용품)

생산물배상책임보험가입내용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가입내용
1. 증권번호: 11807261460000	1. 증권번호: 11807261450000
2. 피보험자: 전국보일러설비협회 회원사	2. 피보험자: 전국보일러설비협회 회원사
3. 보상 한도액: 10억여원(원전보상액) / 2천만원(사고액) / 1,000,000원(자기부담금) ※ 단, 보일러(온수기포함)설비 완성에 한함.	3. 보상 한도액: 대인(1인당), 사망/8천만원, 부상/1천5백만원, 대물(1사고당)/3억원
전국보일러설비협회는 회원을 위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전국보일러설비협회는 회원을 위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한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권종원	한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권종원

## 시공자 하자보수책임 및 손해배상책임보험 의무이행 안내

상기 시공자는 전국보일러설비협회 회원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에 의한 하자보수책임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것이며, 「건설산업기본법」제 44조 및 「도시가스사업법」제4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의무를 더하고자 보일러설비 가스사용작업은 상기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보일러설비 완성작업은 상기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 본 사식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경우 어떠한 사고일지라도 보험으로 보상되지 않으며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전국보일러설비협회 중앙회 ☎ 02-3401-1497)